

택배 관리 및 수령 규정

1. 택배 물품은 1층 식당 앞 택배보관소에 반별로 보관한다.
2. 학생들은 월~토(공휴일 제외) 16시 전후로 1층 식당 앞 택배 보관소 앞,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새로 부착되는 택배 대장을 확인하여 본인의 택배가 있는지 확인하며 불출은 1층 택배보관소에서 저녁식사시간(17:30~18:00)에 진행한다.
3. 택배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는 불허한다. 대리 수령은 팔, 다리 부상 등으로 인해 택배 수령을 부탁을 받은 학생이나 담임교사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위 사항을 제외한 타인의 택배 수령 행위는 절도로 간주,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4. 택배 수령 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담당 교사에게 택배 내용물을 점검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명찰 미착용 시 택배 수령 불가) 부득이하게 명찰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령 시에는, 택배 수령 대장 본인의 이름에 체크 후 수령해야 한다.
5. 고의로 점검을 받지 않고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 택배 수령 대장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6. 당일 게시된 택배 대장에 본인에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변질·분실·파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7. 학원에서 소지 금지하는 품목은 택배로도 전달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배송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금지 물품을 은닉하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8. 수령시간 외에 택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 택배 주문 시 반드시 상세 주소 란에 반을 표기하여 발송해야 한다.

●예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59 러셀기숙학원 여학생관 HS(반명) 홍길동(이름)

전화 이용 규정

1.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화는 담임교사실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모님/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화는 담임교사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이용 적발 시,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3. 입학 2주 후부터 반별 단체 전화를 시행하며 단체 전화 시간은 각 반 담임교사가 체육 시간,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주말로 편성한다.
4. 한 통화에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화 이용 허가증을 소지한 학생만 담임교사실에 출입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화는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이용 중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종료되면, 전화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
6. 허가받지 않고 가족 외 상대(친구, 애인 등)와 통화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7. 학원 법인 휴대전화, 유선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8. 정해진 시간(5분)을 초과하여 전화를 이용할 경우 담임교사실 근무자가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즉시 중단하지 않을 시 **교육점수 5점** 부여)

체육 활동 관련 규정

1. 체력 단련실 이용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다. (특히, 러닝머신)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경우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2. 반드시 충분한 체조 및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이용한다.
3. 정해진 시간(식사시간+힐링타임)에만 체력 단련실(3월 정기휴가 복귀 이후) 이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이용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퇴실 시간 미준수 포함)
4. 식사 시간 이용의 경우 식사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식사 전에 이용한 사실, 식사 순서 미준수 등이 확인 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5. 대기자가 있는 경우 모든 시설을 10분 이내로 이용한다. 독점으로 인한 학생의 민원이 있고, 대기자가 있음에도 1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6. 파손/훼손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시설을 고의로 파손/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7. 당일 외진/양호실 이용자는 체력 단련실을 이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체력단련실

1. 물, 음료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 (미끄럼 사고 예방)
2. 위험한 기구가 많으므로 장난을 절대 엄금한다.
3. 기구 이용 후 바닥에 던져 놓지 않는다. (파손 주의)
4. 기구 이용 후 정리 정돈을 필수로 해야 한다.

보건실 이용 규정

1. 보건실은 교무실 옆(104호 강의실 앞)에 위치하고 있다.
2. 1회 1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짜반)교사 및 담임교사실 근무자(학생관리팀)가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담임(짜반)교사 근무 시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 받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짜반)교사 부재 시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할 때는 담임교사실에 비치된 보건실 이용대장에 본인의 반과 이름, 입실시간을 기재하고 보건실에 입실한다.
4. 퇴실 전 침구류를 정리하고 담임교사실에 보고 후 퇴실 할 수 있도록 한다. 퇴실 시에도 보건실 이용대장에 퇴실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5. 보건실을 이용자는 **당일 심야자율학습 및 체육활동(개인 및 실내체육 포함)을 금지**한다.
6. 보건실은 잠을 보충하는 곳이 아니므로 졸음으로 인한 이용은 엄금하며, 담임(짜반)교사 또는 담임교사실 근무자(학생관리팀)의 판단 하에 상습 이용자의 경우 보건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담임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보건실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대장 미작성, 허위작성(입실, 퇴실시간 허위기재 등)한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8. 보건실 내의 침구, 기타 물건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절도로 간주하여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외진 이용 규정

1. 월~토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09시 45분에** 출발한다.
2. 외진 희망자들은 외진 전날 종례 시간 전까지 담임(짜반)교사에게 증상 보고와 함께 외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임(짜반)교사에게 외진 확인증을 발급받아 외진 출발시간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진 당일에는 **외진확인증, 외투, 마스크, 지갑, 단어장** 등을 지참하여 **09시 45분**까지 1층 로비에 집합한다. 복장은 단체복으로 통일한다. (외투 허용)
3. 가방은 휴대할 수 없다.
4. 공휴일, 정기외출 전·후일 및 모의고사일 등 특정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수액을 맞거나 도수치료 등으로 복귀가 늦어지는 학생들은 택시로 개별 복귀한다. (자비 부담)
6. 학원으로 복귀 시 반드시 외진 담당 교사에게 품신 검사를 받은 후 바자관, 강의실로 이동한다.
7. 진료 결과 특이사항은 외진 담당 교사에게 먼저 보고하며, 학원 복귀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한 후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8. 흡연 및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원내 및 원외 모두 포함)
9. 진료 받지 않거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10. 병원 전화로 외진 담당교사를 제외한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병원과 약국 외의 모든 장소(예: PC방, 당구장, (코인) 노래방, 카페, 편의점, 문구점, 식당, 가족/친척/지인 집 등)에 출입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11. 외진 시 병원에서 고의로 진료 시간을 지연시켜 외진 복귀 차를 타지 않거나 병원 내/외에서 가족, 지인을 만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태블릿PC 이용 규정

1. 바자관 내 담임 책상 위 태블릿PC 보관함에 보관하며 이용 시 반출했다가 이용이 종료되면 충전기에 꽂아 필히 보관함으로 정위치 시켜 놓아야 한다.
2. 1일 최대 3시간 30분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이용 시간에만 이용해야 한다. 추가 수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임(짜반)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목적 외 이용 방지를 위해 밝기를 높이고, 독서대 등에 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교육점수 1점**을 부여한다.
4. 태블릿PC 이용은 수업이 없을 때, 바자관 내에서 지정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며 바자관 외부로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또, 이용 도중 학습 목적 외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짜반)교사 및 학생관리팀에서 불시에 태블릿PC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5. 임의로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배경 화면 변경(연예인, 가족/애인 사진 등) 또한 금지한다. 위반 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기타 태블릿의 설정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6. 본인이 이용하는 태블릿PC에 학습 외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습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 8항과 동일하게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7. 이어폰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귀마개 대응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8. 인터넷 강의 수강의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학습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일체 불허한다. 위 사항을 **1회 위반 시 교육점수 3점 부여 및 태블릿PC 1주일 이용금지, 2회 위반 시 근신 1주(교육점수 10점), 태블릿PC 2주일 이용금지, 3회 위반 시 강제 퇴원 조치**한다.
9. 이용 금지 조치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 금지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대여해 주는 경우 벌린 학생(금지 학생)에게는 **교육점수 3점**, 빌려준 학생에게는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한다.
10. 태블릿PC 파손/훼손 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고의로 파손/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한다.

근신 관련 규정

1. 근신 처분/강제 퇴원은 **교육점수 누적 10점 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원장, 부원장, 입시담임 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된다.
2.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학생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근신 처분을 통보하며 학생과 담임교사는 통보일 다음 날 아침부터 근신을 시작한다.
3. 근신 처분은 처분 1회 차에는 5일, 2회 차에는 10일 혹은 퇴소(강제 퇴원 처리), **3회 차에는 강제 퇴원**한다.
4. 대상자는 08시~22시까지 근신 장소(1층 로비)에서 서서 근신을 한다.
5. 배부되는 근신 상세 일과표에 개인 시간표와 근신 관련 규정을 부착한다.
6. 수업 수강은 가능하며, 수업 수강을 포함한 모든 이동 시 입시담임실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이동해야 한다. (수업은 시작 5분 전 이동)
7. 쉬는 시간은 빈 강의실을 이용한다.
8. 근신이 시작되는 첫날과 근신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22시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 책상에 뒤집어 올려놓은 뒤 바자관으로 복귀한다.
9. 힐링 타임, 심야 자율학습, 태블릿PC 이용, 인터넷 강의 수강, 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10. 정기 외진을 이용할 경우, 근신 일수에서 하루를 추가하며, 외출/박시 외출/박 날짜만큼 근신 일수가 추가된다. 또, 양호실 이용 시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신 시간이 추가된다.
11. 근신 시간 중 학원 규정 위반(지각, 시간 미준수, 잡담 등)과 근신 중 금지규정 위반(신문 읽는 행위, 전화 사용, 힐링 타임 및 체육활동) 적발 시 근신이 하루 연장되며, 무단 이동·태도 불량인 교직원 중 누구에게라도 적발될 시에는 근신을 종료하고 즉시 강제 퇴원 조치한다.
12. 근신자와 대화 시 근신 대상이 될 수 있다.(근신자 대화 금지)
13. 근신 처분 대상자의 관리 및 감독은 주간 학생관리팀이 실시한다. 11항에 기재된 학원 규정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 주간 학생관리팀의 근신 관리 위원회에서 협의 후에 근신 처분자의 근신 연장 등을 논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통보한다. 반대로 근신 학생의 태도 등이 우수한 경우 근신 일수 감면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교육점수/상점 부여 기준

● 학원 상황에 따라 추가, 삭제 및 변경 가능함.

교육점수	위반 내용	
	바른공부자습전용관 / 강의실	숙소
-10점 (즉시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교직원 지시 불응 및 폭행, 폭언(태도 불량) - 고의적 학원 시설물 파손, 훼손(변상조치 포함) - 금지물품 소지 및 사용하는 행위(전자기기, 담배, 흡연) - 택배수령시 금지물품 은닉 및 타인 택배 절도 행위 - 음주, 도박, 선동, 집단행동, 절도, 폭력, 따돌림(왕따) - 무단이탈(학원 앞 베이커리, 카페 이용 등) - 태블릿PC 학습 목적 외 이용 2회 이상 적발 - 태블릿PC 바자관 외 반출(화장실, 숙소 등) - 기타 타 학생의 학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동이나 학원운영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 - 외진 시 이탈행위(병원 외의 장소 출입) - 성희롱, 성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숙소 취침 - 타 규정은 좌동(바자관/강의실)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진 시 미진료 후 복귀하는 행위 - 외진 시 진료시간 지연, 지인 만나는 행위 - 모자 착용(후드집업, 후드티 포함) - 택배물품 시간 외 무단 수령 - 시험 부정행위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PC 학습 목적 외 이용 1회 적발 - 태블릿 비밀번호, 패턴 설정, 기타 설정 변경 - 1층 스탠딩PC 복사 및 출력 목적 외 이용 - 수업 무단 이탈, 불참(선택수업 포함) - 학습 외 물품(정식 허가되지 않은 서적, 잡지 등)소지 - 외출/박 입시담임실 출발 및 복귀 미보고 - 외출 후 복귀 시간 미준수 - 정해진 수업 외 수강(도강), 모든 수업 지장 행위 - 학원비품 무단 이용 및 이용 시간 초과 - 택배 수령 시 고의로 점검 받지 않는 행위 - 학원 내 소란행위(고성, 장난 등) - 허가받지 않은 상대와의 통화(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외 숙소 출입 - 시간 외 취침 및 기타 타인의 취침 방해 행위 - 점호 후 타 숙소 출입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벽면, 숙소 낙서 행위 - 바른공부자습전용관 내 좌석 무단이동 - 보건실 무단출입 및 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 이용시간외 식당, 체력 단련실 이용 - 식사순서, (수업)이동순서 미준수 - 인강 수강 외 용도로 이어폰을 이용하는 경우 - 마스크 미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호 무단 불참 및 점호 중 이탈 - 점호 중 소란행위 - 숙소 내 소란행위(과도한 장난, 고성방가, 휘파람 등) - 점호 이후 대화 - 점호 이후 세면 및 샤워, 이동 - 점호 이후 또는 숙소퇴실시간 후 드라이기, 냉장고 이용 - 타 숙소, 타 층 무단출입 및 소란행위 - 숙소 내에서 음식물 취식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잠담(숙소 방 제외 건물 내 모든 공간 대화 금지) - 자습시간 중 음식물 섭취(커피, 차 허용) - 입실 시간 준수 규정 위반(강의실, 바자관) - 바자관 자습시간에 1층 수업 쉬는 시간 학생 바자관으로 이동 - 단체복, 명찰 미착용, 명찰훼손(이름 보이게 패용 必) - 체력단련실 이용 시 단체복 및 슬리퍼 착용 - 식당 이동 시 단여장 미지참 - 태블릿PC 이용 상태 불량(방기 내림, 독서대 외 위치) - 쓰레기 무단 투기 - 자습시간 내 이동 - 질의응답 관련 규정 위반 - 자습태도 불량(졸음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호 집합시간 미준수 - 점호 시 단체복, 명찰 미착용(복장불량) - 아침 점호 이후 재취침 - 숙소 문 잠금 - 숙소 퇴실시간 위반 및 재입실 - 숙소 정리정돈 상태 불량 - 문 외시경 가림행위 - 기타 불쾌감을 주는 행위 (속옷만 입거나 나체로 이동 등) - 식당 내 정숙위반 및 식당 퇴실시간 미준수 - 숙소 내 음식물 반입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 : 0~3점 - 명상 발표 : 0~2점 - 리셀 학습플래너, 수학30제 작성 우수 : 1~5점 - 반장, 부반장, 체조반장, 신입생 도우미 등 : 1점 - 체조, 입실시간 준수, 바자관 정리, 면학분위기, 학습 플래너 작성 우수한 모범반 반 상점 10~30점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정리 상태 우수 : 2점 - 숙소 생활 우수자(매월) : 1점

※ 생활하는 동안 금지 물품 소지가 의심되는 상황에는 개인 소지품 및 숙소 물품에 관하여 일괄 점검을 진행합니다. (금지 물품 발견 시 징계 위원회 회부,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3달간의 교육점수 결산 / 결산 전 마지막 주에 부여받은 교육점수/상점은 이월됨.